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영향과 주류업계 대응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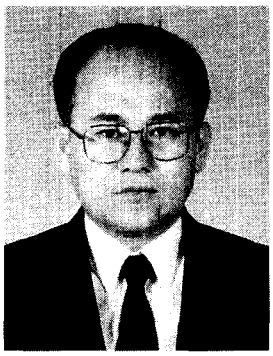

하 병 기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目 次■

1. 추진배경 및 경위
2. MAI의 주요 내용
3. 일반적인 효과
4. 우리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효과
5. 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6. 마치는 글

1. 추진 배경 및 경위

OECD가 21세기의 세계 투자 자유화와 투자 보호를 규정하는 다자간 투자협정을 위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98년 4월에 개최될 각료이사회를 타결 목표시기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가 그것이다.

OECD가 MAI를 논의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해외직접투자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어 세계경제에서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생산과 영업활동을 확대하여 왔었다. 그 결과 1983년에 470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던 세계해외직접투자 흐름은 1996년에는 3,490억 달러로 확대되어 같은 기간의 세계 경제와 무역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60년대 만 하여도 해외직접투자는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만이 수행하는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국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로 해외직접투자는 이제 기업 경영전략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수단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국경내에 한정하여 생산활동을 펼치던 시대에서 최적의 생산입지를 선택할 때 세계 전지역을 대상으

로 하는 소위 세계화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투자에 관한 국제협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WTO가 아니고 선진국 클럽으로 일컬어지는 OECD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개도국을 제외하고 선진국들이 협상에 참가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선진국 기업들이 전세계 해외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투자자유화와 보호에 관한 국제적 규범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나라들은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이미 자유화를 상당히 추진한 상태인데다 추가적인 투자자유화를 일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개도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의 도입이 필요한 반면 뒤떨어진 자국기업의 생산기반을 확충하여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해외투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입장이 강한 편이다.

OECD가 자본자유화 규약, 내국민 대우 조항 등의 투자관련 조치를 갖고 있으나, 법적인 강제성이 미비하여 강제력 있는 규정의 설립이 필요한 것도 일찍부터 투자협정을 논의하게된 한 배경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OECD는 1995년 각료이사회에서 MAI의 협상을 시작하여 1997년 5월 각료이사회까지 완료하도록 하였으나 1997년 각료이사회에서는 1998년 각료이사회까지로 한차례 연기하였다. 협상을 시작하기 이전인 1991년부터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 위원회(CMIT)와 다국적기업위원회(CIME)는 투자의 경제적인 효과, 협정의 내용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사전 준비를 하여 왔었다. 이점에서 선진국들이 많은 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

이러한 사전준비에도 불구하고 지역협정, 환경, 금융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회원국들이 의견차이로 계획하였던 시점에 협상을 마치지 못하고 연기된 것이다. 현재 협정문에도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로 금년 10월 이후 각국이 제출한 유보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어 내년 각료이사회까지 MAI에 합의할 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더욱이 예정대로 1998년에 각료이사회에서 MAI가 설립되더라도 회원국이 자국의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MAI는 2000년에 가서야 발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드러난 MAI의 초안 내용을 소개하고 그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2. MAI의 주요 내용

MAI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각국의 투자제도를 自由化하고 ② 투자자와 투자를 保護하며, ③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紛爭解決過程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 적용되는 다자간 체제로 최상의 투자자유화 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OECD회원국간에 이견이 있지만 주요한 내용에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투명성의 원칙을 적용

이러한 MAI의 기본 원칙으로 內國民 待遇(National Treatment) 및 最惠國待遇(Most Favored Nation)와 透明性(Transparency)을 지적할 수 있다.

내국민대우(최혜국 대우)란 투자의 설립, 인

수, 확대, 운영, 경영, 유지, 사용, 향유, 판매, 여타 처분 등에 있어서 체약국의 투자가와 투자에 대해 유사한 상황에서 내국민(체약국 혹은 비체약국) 투자가와 투자보다 못하지 않은(no less favorable) 대우를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투명성은 MAI를 시행하는데 영향을 주는 법률, 규정, 과정, 행정적인 판정, 사법적인 결정, 국제적인 협정을 공표하거나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협정의 시행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로 공개하여야 함을 말한다.

(2) 모든 형태의 資産에 대한 투자에 적용

MAI에서는 협정의 대상이 되는 투자를 '투자가가 직간접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형태의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의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에 영속적인 이해관계를 갖기 위해 수행되는 해외직접투자의 정의를 훨씬 초과하는 단일의, 광범위한, 자산에 기초한(single, broad, asset-based) 개념이다.

투자가도 영리, 비영리 단체나 민간이나 정부관련 모든 단체를 포함하는 협정을 체약한 국가의 자연인이나 단체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MAI의 대상인 자산은 자본, 손실 기대, 위험 부담 등의 투자로서의 성격을 가져야만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해외직간접투자 뿐만 아니라 지분, 주식, 채권, 경영상의 계약, 라이센스와 같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거의 모든 자산을 포함하고 있다.

(3) 고용의무, 수출이행의무 등을 금지

MAI는 내국민 대우 등의 기본 원칙 외에 고용 투자이행의무 등과 같은 개별 사항을 특수항목으로 분류하여 투자와 투자가를 대우해 주도록 하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규정의 범위내에서 투자가, 경영자, 관리자, 전문가와 같이 투자의 설치, 관리, 운영에 필요한 핵심 인력의 일시적 입국과 체재, 취업이 허용된다. 가족의 입국과 배우자의 취업도 허용하도록 협정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체약국은 정당한 체재나 취업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을 국적에 상관없이 자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만 한다.

특정한 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상급관리직(senior management positions) 혹은 이사에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다.

투자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수출이행요건, 국산품 사용조건, 특정인으로부터의 구매, 외환수입과 연계한 판매액의 제한, 기술이전의무, 현지인 고용의무, 합작투자의무 등을 부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WTO의 무역관련조치(TRIMS)가 무역 관련한 투자조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MAI에서는 무역과의 관련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 이행조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협정 초안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건강, 안전, 환경, 노동기준을 약화시켜서는 안됨을 명기하고 있어, 각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사회복지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정부자산의 매각, 독점기업의 지정 및 유지 그리고 투자 인센티브의 부여 등에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와 투명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협정은 규정하고 있다.

(4) 강력한 투자보호와 분쟁해결절차

MAI는 투자와 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 대우로서 체약국의 투자와 투자가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하고 충분하게 보호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투자의 수용과 보상, 분쟁으로부터의 보호, 투자관련 자금의 자유로운 移替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특히 이미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서도 이 협정이 적용될 것을 명기하여 기존투자의 안전도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화조치와 보호조치외에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MAI는 강력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MAI의 분쟁해결은 MAI의 해석 혹은 적용에 있어서 체약국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 중개, 조정, 중재 등의 과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절차(State-State Procedures)와 투자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Procedures)로 나누어진다.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국가간에 한정되는데 반해 MAI에서는 투자가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투자가 보호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일국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와 관련하여 MAI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例外 및 세이프 가드(Exceptions and Safeguards), 금융서비스, 유보, 회원가입 등에 관한 조항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

3. 일반적인 효과

(1) 해외투자의 증가

MAI가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MAI가 해외투자에 따르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낮추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MAI는 참여국간에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MAI 불참국도 투자유치가 필요하므로 참가국에 버금가는 투자환경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현재 MAI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해외직접투자에 나선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태별로는 기존의 투자를 엮는 네트워킹 형태나 전략적인 투자로 투자가 고도화되어 갈 것이다.

MAI의 대상이 모든 자산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세계 경제 내에서 금융자산의 거래, 즉 해외간접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선 국가간 자산 거래의 안정성이 제고됨에 따라 해외자산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잠재적인 수요를 확보하려는 금융기관의 노력이 이러한 수요를 더욱 확대시키고 또한 국제적인 제도 및 국내적인 제도가 개선되는 상호상승효과로 금융자산의 국제거래가 활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해외간접투자의 확대는 이차적으로 국가간 M&A를 더욱 확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해외간접투자가 기업의 경영권 확보가 아닌 투자수익을 목표로 하지만 경영권 확보나 경영에의 간섭으로 목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해외간접투자의 확대는 M&A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간 M&A의 자유화에 따른 일차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MAI가 장기적으로 국가간 M&A에 미치는 효과는 더 클 것이다.

(2) 旣存 投資의 再調整

기존의 해외투자도 MAI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외직접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기존투자를 재조정할 잠재성이 상존한다. MAI의 시행에 따른 투자조건

의 자유화로 기업은 과거 투자시 제약 받았던 조건을 검토하여 조정하려 할 것이다. 특허권이나 특정 기술 등 기업 특유의 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은 해외투자에서 완전한 소유를 선호하므로 이러한 기업이 과거 투자시 투자지분에서 제약을 받았을 경우 이를 수정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94년 현재 미국기업이 해외자회사를 완전하게 소유한 경우가 80%에 이르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다국적 기업이 완전 소유를 선호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협력업체에서 새로운 협력업체로 변경하거나 협력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쉬워짐에 따라 상황변화에 따라 협력업체의 변경이나 인수가 더 빈번히 이루어질 것이다. MAI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국내 코카콜라 영업권을 둘러싼 코카콜라사와 국내업체의 분쟁도 기존의 계약을 변경하려는 데서 나온 한 사례로 들 수 있다.

(3) 정책 운용의 제약과 국제적 정책협조

WTO의 출범으로 무역정책수단의 임의적인 운용이 제한되듯이 MAI가 출범하게 되면 투자자산의 흐름을 제한하는 정책수단을 국내경제의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특정한 분야에서 MAI의 적용을 유보할 수도 있으나, 이는 한시적인 조치이고 유보조치에 대한 상호 협상과정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MAI가 적용될 수 밖에 없어 정책운용에서 제한을 받게될 것이 분명하다.

협정의 시행으로 일국 경제정책이 여타국의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상호연관성이 커짐에 따라 경제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있어서 국가간에 협력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현재 G7 선진국 경제 정상회담과 같이 더 많은 국가와 지역간에 정책 협조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 企業 環境의 可變性 증대

투자의 자유화와 보호는 기업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서 해외직접투자, 해외간접투자, 특허권 수출입, 기타 자산의 거래, 경쟁 및 협력기업과의 협정 등과 같이 국가간 거래에 대한 안정성을 높여준다. 안정성이 제고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증가하고 거래에 수반되는 서비스의 제공 및 정보와 관련된 전문 서비스업이, 예를 들면 해외자산에의 투자관련 서비스, 국제변호사 업무, 전문적인 정보제공 등과 관련한 업종이 발달할 것이다.

국가간 거래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는 반면, 국가간 M&A의 확대, 환율 변동, 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 확대 등으로 특정지역내에서의 기업환경이 급변할 위험성은 오히려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간 거래의 위험성이 낮아지고 반면 특정 지역내에서의 거래는 가변성이 증대됨으로써 기업으로서는 국가간의 거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기업의 세계화가 촉진될 것이다. MAI가 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효과는 해외투자의 자유화에 의한 일차적인 효과도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 기업환경의 가변성을 높임으로써 이에 대해 기업이 세계화라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이차적인 효과도 있다. 해외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기술도입, 구매 및 판매에서의 전략적인 제휴 등과 같은 기업의 세계화 전략이 필수적인 경영전략으로 부각할 것이다.

(5) 全面的인 경쟁시대로

모든 지역에서의 고용, 생산, 판매, 그리고

기업과의 제휴 등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기업이 고용, 생산 등 모든 면에서의 경쟁하는 전면적인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모든 측면에서 한 기업이 경쟁우위를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우므로 전면적인 경쟁의 시대에서는 경쟁우위요소를 더욱 강화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적절히 이용할 때 나타나는 외부경제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월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의 기업문화가 수입되고 각국의 기업문화가 병합되어가는 세계화 과정이 확산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통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격파괴, 환불제도 등은 우리의 상도의에 어긋나는 외국의 기업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화의 과정에서 수입된 한 예라 할 수 있다. 외국문화의 수입은 그 이전 문화에 익숙해 있던 기업의 몰락 혹은 변신을 요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조정에 따른 비용의 지불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6) MAI효과 나타나고 있어

MAI가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어떻게 기업의 행태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경험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NAFTA에 대해 협상중일때 미국, 일본, 한국 등의 기업들은 이미 이에 대비하여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켰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기업들이 MAI에 대비하여 전략을 수립중이거나 또는 일부를 시행에 옮기고 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다만, MAI의 경우 관세인하나 수입쿼타의 철폐와 같이 수량으로 측정할 수 있는 조치도 아니고 그 효과도 측정하기가 힘들며 일부부문 이외에는 완만하게 나타나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있다.

어느 부문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인가는 모든 기업의 전략적인 움직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상품교역과는 차이가 있다. 무역자유화의 경우는 자유화되는 대상품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반면에 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이나 지역에 존재할 수 있게 하는 MAI의 효과는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과 이에 대응한 기존기업의 전략 및 행태에 의존한다. 우리나라가 유통 부문을 개방할 때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예상하고 국내 기업이 대형할인점을 개설함으로써 국내 유통시장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한 경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방의 효과가 개방시점에 앞서 나타나고 그 효과도 관련된 모든 기업의 전략에 의존함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우리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효과

(1) 경쟁력 확충 기회 제공

시장개방,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서 MAI는 또 다른 변화 요소를 추가하여 우리 기업의 적응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한편 변화과정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MAI는 해외투자, 해외기업과의 제휴라는 선택수단을 쉽게 함으로써 기업의 운신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해외투자에 나서지 못하거나 않고 있는 기업에게는 시장에서 경쟁이 강화될 잠재성이 커진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외국인투자나 외국기업의 국내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은 시장이 크거나 성장잠재력이

큰 업종에서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업종 내에서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경쟁형태에서도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과 경쟁하는 무역자유화의 경우와는 달리 해외투자나 외국기업과의 제휴, 국제적인 아웃소싱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로칼 기업간에 경쟁하는 구도로 변화한다.

투자 환경이 호전되면서 우리 기업은 해외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네트워킹 투자와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투자고도화를 시도함으로써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세계화 추진에서 뒤처져 있어 세계화 추진 폭이 넓다는 의미에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투자에 대한 자유화 정책으로 현지 자금 조달이 용이하여 지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및 운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부채비율, 안정성, 성장성 등에서 우월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에 자금운용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개도국들도 투자협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한 투자설립시의 투자요건이 구속적이지 않게 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이들 국가에서도 훨씬 자유롭고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개도국에 대한 기존 투자를 세계화 전략에서 어떠한 형태로 네트워크화 하느냐가 우리 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건이라 할 수 있다.

MAI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혹은 특허계약, 판매계약, 혹은 전략적인 제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제조업의 개방효과는 크지 않아

제조업의 경우 2000년까지 외국인 투자가 완전히 개방될 계획이고, 오히려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특혜조치를 고려할 정도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조업 전체로 보면 MAI에 의한 외국인 투자 증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90년대 들어 우리 나라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환경 정비와 지원책을 강구하여 온 데다 MAI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일부 부문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해외투자 유인을 투자기업의 목적에 따라 보면 저임금 등의 생산비용, 고급 노동력이나 기술 축적에 따른 생산 효율, 현지 시장의 크기 및 잠재성, 제3국 시장 진출, 네트워킹 투자의 본부,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 필요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저임금 등의 생산비용은 우리 나라에 대한 투자유인이 될 수 없다. 생산효율이나 현지 시장의 크기 및 잠재성은 우리 나라에 대한 투자 유인으로 가장 가능성이 크며, 우리 나라 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의 필요성도 우리 기업의 국제적인 신인도가 제고되면서 주요 요인으로 부각할 것이다. 제3국 시장 진출과 네트워킹 투자의 경우는 중국시장이 있다는 점이 있으나, 현재 물류비용, 규제 심화등으로 이 목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중에서 철강, 화학, 일차금속 등과 같은 소재산업의 경우 부동산을 비롯한 대단위투자가 필요한 데다 수요측면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유도할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MAI 발효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음식료품, 의류 등과 같은 내수품의 경우 국내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M&A, 브랜드 협약, 생산업체에의 지분참여, 합작투자 등으로 외국기업이 국내 시장에 참여할 가능

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자, 컴퓨터, 통신기기 등과 같은 전자 및 통신기기산업의 경우에는 고기술의 인력, 한국기업과의 상호 공급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투자나 기술협력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일반기계 등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는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의 확대가 기대된다.

세계 전체적으로 세계시장을 네트워크화하는 형태의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MAI가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유통부문을 예를 들면, 우리 나라에 진출한 기업이 세계적인 네트워크하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게되면, 우리 제조업, 특히 내수 제조업자는 국내 시장을 잠식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 제공, 혹은 여타 서비스업도 전략적인 제휴 등을 통하여 외국기업의 선전, 물품 공급 혹은 조달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기에 제조업 부문의 국내 시장이 잠식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힘들다.

(3) MAI의 시장개방효과 서비스업에 집중

서비스업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취약한 데다 서비스업의 특성상 시장에 존재하여야 하기에 외국인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금융, 유통, 통신과 같이 국내 수요가 크고 대자본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외국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유통업 개방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거대 자본의 국내유입은 경쟁을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분화 그리고 소기업의 몰락을 초래하고 새로운 경영전략을 개발 혹은 도입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서비스 부문의 투자자유화는 거대 자본과 선진경영의 도입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과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틈새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5. 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1) 영향

우리나라의 주류시장은 1984년 7월의 맥주시장을 개방한 이후 1990년 1월에 브랜디 등 전 주류제품에 대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완전 개방체제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92년에 이미 외국인의 주류업계 투자를 허용한데 이어 1999년 1월에는 주정제조업의 합작의무를 폐지함으로 외국기업의 국내에서의 생산 또한 완전히 개방되게 된다.

주류산업도 여타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입품에 대한 시장개방뿐만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생산에서도 완전개방되면서 세계시장에 빠른 속도로 통합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주류산업에는 합작투자 혹은 브랜드 협약으로 이미 외국인의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류 시장의 규모가 크며, 최근에는 위스키 등 고급양주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외국기업이 우리 시장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시장 개방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소비자의 기호와 마케팅에도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우선 외국기업이 단독투자, 합작투자, 제휴 등으로 국내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외국기업이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 협약에서 합작투자로, 단순한 지분참여에서 대주주의 지위로 기존의 영업관계를 조정하려고 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외국기업이 영업망이나 생산시설을 통하여 국내에 존재하는 것은 시장공급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외국기업은 스스로의 기업문화, 즉 마케팅 기법이나 영업전략 등을 도입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외래기업문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곤혹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게다가 외국기업의 진입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규모의 경제나 효율성을 적극 추진할 경우 주류시장에서 급격한 구조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소자본이나 영세성을 갖춘 기업이 도태될 가능성을 상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더하여 기존의 기업도 해외투자, 합작투자 혹은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해외에서 생산된 주류를 국내로 유입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 대응

우선, 국내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할 잠재성이 커짐을 고려하여 경쟁자와의 투자행태와 영업전략에 관한 정보수집은 물론 이를 고려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 시장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변화가능성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우선 자체적인 경쟁우위요소와 열위요소를 재점검하고 우위요소는 강화하고 열위요소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민속주의 경우 품질 자체의 우수성과 소규모 수요의 열위성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투자, 영업 등의 전략수립시 세계 전기업의 행태와 전지역을 염두에 둔 세계화 경영전략을 입안,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해외로 직접 투자에 나서거나 외국기업과의 제휴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련 기업의 행태나 장래 투자지역의 경제여건 변화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주류산업도 기업 세계화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에 나서지 않더라도 국내 시장이 세계시장에 편입되면서 기업 세계화에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으로서는 환위험, M&A, 잠재적인 경쟁자의 출현과 같은 가변적인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선물환 제도를 이용하는 등 금융자산의 활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6. 마치는 글

댐의 수문을 낮추면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흘러내릴 수량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관세인하와 같은 수입자유화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눈으로 확인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에 MAI의 효과는 국내시장의 크기, 해외기업의 움직임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국내기업의 움직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인지, 어느 정도인가를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유통시장의 개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기업이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그 효과는 크다는 사실만을 얘기할 수가 있을 뿐이다.

더욱이 그 효과는 WTO, 규제완화, APEC, 전자상거래의 발전 등과 관련되어 증폭되어

질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로 이제 기업 경영의 장이 국내에만 한정되지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 주류업계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리라 판단된다.

孤雲出岫, 去留一無所係. 朗鏡懸空, 靜躁兩不相干.

한 조각의 구름 산의 암혈에서 피어오르매 가고 머무름에 조금도 매임이 없고, 밝은 달 하늘에 걸려 있으매 고요하고 시끄러움에 다 같이 비추네.

- 菜根譚 중에서 -